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3.

발 의 자 : 이춘석 · 윤준병 · 김의겸
朴芝源 · 임미애 · 서삼석
김성범 · 정준호 · 안호영
양부남 · 박해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,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·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,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).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“경계선지능인 한부모”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1호의2”를 “제1호의2·제1호의3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6 및 제17조의7을 각각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로 하고,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6(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한 지원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(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가정의 생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

있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의 신청 절차·방법 및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가족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1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정의) ----- -----. 1. 1의2. (현행과 같음) 1의3. “ <u>경계선지능인 한부모</u> ”란 「 <u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2. ~ 7. (생략) 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2. ~ 7. (현행과 같음) 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제1호의2·제1호의3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7조의6(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한 지원) ① 특별

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(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가정의 생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
	<u>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의 신청 절차·방법 및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/u>
<u>제17조의6</u>(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) (생 략)	<u>제17조의7</u>(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) (현행 제17조의6과 같음)
<u>제17조의7</u>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 (생 략)	<u>제17조의8</u>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 (현행 제17조의7과 같음)